제45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2020. 7. 31.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7. 31. (금) 14:00 ~ 19: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916호)

○ 출석위원(21명)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주재)

- 민간위원 :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소라・박순애・안소은・양옥경・원구환・윤여송・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철수 정은미 위원

- 정부위원 :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법제처, 국조실
  * 불참(2) : 행안부, 산업부

Ⅱ. 상정안건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 분
2020-387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안건
2020-389	금융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안건

Ⅲ. 심의 결과

1. (심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2020-387)

□ 개 요

소관 부처	교육부
근거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규제 사무명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 인원 등에 대해 관할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결정 내용	철회 권고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반대 의견>

○ (A단체) 본 규제는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사학법인의 자율적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임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

교육부에서 위임근거로 제시한 「사립학교법」(이하 '법') 제4조의 지도·감독권은 행정사항이지, 입법사항이 아니므로 위임근거가 될 수 없음.

현재 사립학교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채용인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제를 시행령에 입법할 필요성이 없음.

아울러,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강제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내세워 신규채용과 무관한 위탁채용, 법정부담금 납부, 소요 예산, 보안 등과 연계하여 사학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우려됨

실제로 2019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전협의를 하면서 과목별 채용인원 외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시험 보안, 예산 조달 계획 등의 사유를 들어 채용계획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하였음. 이때,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면 채용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일부 사립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바 있음

○ (○○○ 위원) 사전협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 (A단체) 통상적으로 퇴직교사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급 편성 전(3월)에 사학법인별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 위원) 현재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라 과목별 채용인원에 대해 사전협의 중인데, 이에 대한 사학법인의 입장은?

○ (A단체)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도 사전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몇몇 교육청에서 이를 확대해석해서 과목별 채용인원 외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사학법인들이 난감한 상황임

○ (○○○ 위원)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 매뉴얼로 사전협의가 시행 중인데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 (A단체) 매뉴얼 작성 후 사전협의에 위탁채용, 법정부담금 등 채용인원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했음. 법령에 과목별 채용인원 '등'으로 규정된다면 더 큰 부담이 발생할 것이 우려됨

○ (○○○ 위원) 특정 과목의 채용공고가 나지 않아 몇 년째 응시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음. 과목별 채용인원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지?

○ (A단체) 전체 과목별 채용인원은 교육정책 차원에서 학령인구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사립학교에서도 교원수급계획을 제출하고 있음. 본 규제의 사전협의는 개별 사립학교와 교육청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과목별 채용인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에 다소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함

○ (○○○ 위원) 최근 교원 임용대기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사립학교와 사전협의를 통해 임용대기자들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 (A단체) 교원 임용대기자 문제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교육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 위원) 2019년 문제사례로 제시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위탁채용을 하면 채용계획을 다 수용했는지?

○ (A단체) 위탁채용을 신청한 경우 다 수용되었고, 자체 채용한 경우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부적정 평가를 받았음.

○ (○○○ 위원)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서 '등'을 삭제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 (A단체) 근본적으로 사전협의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나아가 과목별 채용인원 등으로 규정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것임

(2) 부처 의견 청취

○ (교육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가 예측되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인원도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함

현행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학급수 및 학생수를 결정하고 사립학교 교원 정원을 반영하여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교원 정원 및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별 수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원 채용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위원) 현재 매뉴얼로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법제화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교육부) 현재 매뉴얼을 통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수가 많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본 개정안을 통해 사전협의를 법제화할 경우 이를 근거로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시행이 가능함

○ (○○○ 위원)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시 처벌규정은?

○ (교육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 위원) 현행 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급수 및 학생수를 결정하고 이에 맞게 교원 정원이 결정되고 있는데, 굳이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협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규제임. 법률의 명백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매뉴얼을 통해 시행 중인데 법제화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로 보여짐.

또한, 과목별 채용인원을 협의한다고 해서 채용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비리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려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설명 필요

○ (교육부) 사립학교에서 적정한 교원 정원에 맞춰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별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적정한 규모의 교원 수를 유지하고, 필요한 교과목 정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협의가 필요함

○ (○○○ 위원) 협의는 두 당사자 간에 이해 상충 지점을 조정해서 미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본 규제는 상황에 따라 협의 사항이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연 협의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임.

사학법인 입장에서 교육청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은 큰 부담임. 사학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부) 법 제4조에 따라 사립학교는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동법 제43조에 따라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외국사례와 달리 특수성이 있음. 따라서 교원 채용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매뉴얼에 따라 과목별 채용인원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나 매뉴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교육청마다 달라질 수 있음. 본 규제로 일관성 있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함

또한, 사립학교 교과목 채용인원과 관련한 채용비리 사례가 있음.

① 사립대학 교원 퇴직자들을 같은 재단 고등학교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한 사례, ② 교장의 딸을 철학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철학 교과목을 신설하여 채용한 사례, ③ 내정자 채용을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과목을 채용한 사례 등이 있음.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 위원) 매뉴얼에 따라 사전협의 진행 중에 위탁채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실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본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교육부) 과목별 채용인원과 위탁채용은 무관함.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포함되는 내용은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등에 국한되는 것임. 본 규제로 위탁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음. 시행령 제21조의 위탁채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립학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됨

○ (○○○ 위원)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대한 교육부의 해석은 존중하나, 담당자가 바뀔 경우 확대 해석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 법정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본 규제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음.

교육부는 여러 조문을 확대해석해서 위임근거 있다고 주장하나 타당하지 않음. 정말 필요한 규제라면 법률에 규정해야 함

또한, 자사고 등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학에도 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채용계획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현재 교육부 담당자들의 자체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 (교육부) 연간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로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약 5조원에 달함. 채용인원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함. 자사고의 경우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임. 이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교원 정원을 관리하려는 것임

○ (○○○ 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교원 총 정원만 관리하고 그 총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사후적 통제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위원) 본 규제로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증대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갈수록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가 동일해지면서 자율성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본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비용이 클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은?

또한, 현재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본 규제 도입으로 사전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사학을 관리·감독할 조직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닌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아닌지?

○ (교육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동일해져간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동일하게 자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환경에 적합한 과목의 교원이 확보됨으로써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함

○ (○○○ 위원) 본 규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필요

○ (교육부) 교육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혁신방안을 추진 중임. 본 규제는 채용비리의 시작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음

○ (○○○ 위원) 교육부에서 본 규제의 위임근거로 제시한 조문인 법 제4조는 일반적인 지도·감독 규정에 해당함. 교육부 주장에 따르면 본 규제를 개정하지 않아도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굳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일반적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설명이 됨.

또한, 법 제43조의 예산 지원을 위임근거로 제시했는데 통상 예산 지원 후 업무·회계 보고 등을 통해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데, 본 규제처럼 예산 지원 대상에 대해 사전 통제를 하는 게 맞는지?

○ (교육부) 본 규제는 일반적 지도·감독권에 포함되나,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제도화하려는 것임

○ (○○○ 위원) 사전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인건비 보조금 지원 제한 외에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법령 구조상 본 규제를 위반시 임원취임 승인취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 (교육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회계 부정행위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적용됨. 사전협의 위반시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승인취소까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위원) 헌재 판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기본권의 하나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과목별 채용인원을 사전협의한다고 해서 사학비리가 근절된다고 보기 어려움. 정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임

○ (교육부) 사전협의를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필요한 과목별 교원을 논의하고 적정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의 절차를 규정해주는 것에 해당함.

○ (○○○ 위원) 사전협의 의무 위반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 필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인지, 사전협의는 했으나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인지?

교육청에서 학급수 및 학생수를 정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별 수요기준이 있을텐데 사립학교에서 정원 내에서 수요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자체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건비 보조금을 주지 않는 행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 위원) 사전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함. 이는 협의가 아니라 합의 또는 승인으로 보임.

○ (○○○ 위원) 교육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사립학교의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지도·감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까지 지도·감독하고 어디까지 자율성을 부여할지 전반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관리하려는 것임

○ (○○○ 위원) 전반적으로 규개위원들은 사학혁신 차원에서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도에 동의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률 근거가 없어 규제 법정주의에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3) 위원회 논의

○ (○○○ 위원) 교육부는 법 제4조 및 제43조를 위임근거라고 주장하나, 제4조는 일반적 지도·감독권이지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또한 제4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해도 이에 대한 통제는 업무보고 등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제53조의2는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전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규제의 위임근거로 보기 어려움

교과과정의 자율성은 사립학교 자주성의 핵심이라고 봄. 과목별 교원 수는 교과과정의 자율성과 직결되므로 본 규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함. 국회 입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철회권고 의견임

○ (○○○ 위원) 위임입법 일탈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 제한 등을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행 규정 제4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철회권고 의견임

○ (○○○ 위원)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본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 철회권고 의견임

○ (○○○ 위원) 아울러,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사전협의 및 인건비 지원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도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심의 결과 : 철회권고

○ 본 규제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 규제 법정주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철회권고**

-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위반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뉴얼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가 있음

2. (심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금융위, 2020-389)

□ 개 요

소관 부처	금융위
근거 법령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제13조, 제25조 및 별표
규제 사무명	대표회사의 선정 및 업무 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위원회 결정 내용	개선권고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반대측)

○ (○○○업계) 금융시스템 안정, 투자자 보호 등 법률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의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회사가 상법 등 기존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 등으로 조정 권한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그룹 회사 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위원) 일부 금융그룹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업계) 현재 금융그룹별로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고 이를 내부위험관리에도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그룹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합의된 측정 수단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애로가 예상됨

○ (○○○위원) 금융계열의 회사로만 구성된 금융그룹의 경우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룹차원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업계)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권역별 감독법령 등에 의거하여 리스크 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그룹 차원의 위험편중, 위험 전이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충분치 않고 위험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자본, 충당금의 수준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위원) 지난 2년간 모범 규준의 운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업계) 모범 규준을 통해 자료 제출 체계가 구비되었고 협의체를 운영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모범 규준 내에서도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 동 법이 제정되면 그룹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및 회원사간 협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그룹 차원에서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는지?

○ (○○○업계) 동 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견제조직을 신설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으나, 대표회사의 조정, 통합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회원사간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봄

○ (○○○위원) 금융그룹 내에서 회원사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관리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 (○○○업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회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속회사의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사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위원)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에게 강제 조정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업계) 대표회사가 조정권한을 가지는 경우 자료 협조, 의견조율 등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 당초에는 이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대표회사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회원사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배임소송 가능성 등이 있어 현재는 제정안에 반대하지 않음

○ (○○○위원) 외국에서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금융그룹 내에 대표회사를 지정해서 감독,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 (○○○업체)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움. 이번 법률과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리스크와 관련한 의사결정보다는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 미국의 경우 감독기관이 업권별 확장감독을 통해 자회사나 모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보유. 유럽의 경우 지급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를 공유하는 회사를 통합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금융그룹내에서 대표회사와 각 소속회사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 (○○○업체)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및 금융당국과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소속회사는 이에 협조해야

함. 소속회사는 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지만 의결 권한은 보유하지 않음. 주요 사안의 결정 권한은 금융그룹 내에서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회사의 이사회가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금융당국이 이번 법률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업체)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개별 업권의 감독만으로는 거시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부처 의견청취

○ (금융위) 과거 동양증권이나 대우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그룹 내의 위험이 일부 금융회사로 전이되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 IMF는 우리나라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인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모범규준을 운용해오다가 이번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위원) 금융당국이 모범 규준을 운용해오면서 리스크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축적하셨는지?

○ (금융위) 지난 2년간 모범 규준을 운용하면서 금융그룹내의 정보공유 및 보고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금융그룹 차원에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 보는 등 여러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위원) 이번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금감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 (금융위) 금융위는 IMF의 권고 등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하위규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할 때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위원) 금융그룹내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와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같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이해가 상충되는 소속회사들간에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금융위) 동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각 업권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각기 공시를 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그룹 전체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또한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평가, 추가 적립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

○ (○○○위원) 금융그룹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금융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금융위) 회사의 내부사정은 회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금융그룹에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감독당국은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포착하기 위한 지표를 꾸준히 개발하면서 감독 역량도 신장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

○ (○○○위원) 현재 모범 규준을 통해 리스크 예방이 잘 되고 있다면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이번 법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 및 기대되는 효과는?

○ (금융위)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단년주의로 매년 개정이 필요한 데다 행정지도의 성격상 제재나 시정조치는 불가능. 이에 법제화를 추진하여 시장위험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때에는 위험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 등을 마련할 예정임. 아울러 금융그룹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위원) 지난 2년간 모범규준을 적용하면서 금융그룹의 적정 BIS 비율을 산정해 보거나 가시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

○ (금융위) 모범규준을 운영해오면서 업권별로 BIS비율, NCR, 연결 RBC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위험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을 산정해보기도 했음. 시장위험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BIS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됨

○ (○○○위원) 제정 추진 법안 내용을 보면 입법 형식상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통상 자동으로 제외되도록 하는데 반해 금융위가 판단하여 특정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이유는?

○ (금융위) 다른 법에 유사한 표현을 한 사례가 있어 참고하였으나, 지주회사법과 같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경우 응당 제외할 것임

○ (○○○위원) 금융회사의 인허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여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특히 건전성 확보를 요건 중 하나로 포함하였는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법률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소지는 없는지?

○ (금융위) 여러 요건 충족 여부를 인허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리스크가 현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불안요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포함된 것임. 법제처 심사과정 등을 통해 수정할 용의도 있음. 또한 건전성 확보 의무는 은행법에도 유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위 시행령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계획

○ (○○○위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현재로서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6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지?

○ (금융위) 규제 도입으로 감독당국이 실제로 제재조치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금융위는 금융그룹이 시장위험에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할 것임. 규제 대상이 현재는 6개지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대상이 발생할 경우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위원) 금융그룹이 대표회사를 선정해서 대표회사가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까지 해야 하는데, 대표회사가 이해상충을 해결할 권한이 없다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 (금융위) 대표회사는 최상위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속회사간 협의를 통해 여타 회사도 선정 가능함. 대표회사는 회원사간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총괄하며 금융당국과의 창구역할을 수행함. 아울러 자료제출이나 조치 이행 요청 의무 위반시에도 대표회사가 아닌 책임이 있는 해당 소속회사에 책임을 물을 예정임

○ (○○○위원)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2건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법률과의 차이점은?

○ (금융위) 과거 발의안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조치명령, 강제주식처분과 같은 강한 조치가 포함되었으나, 이번 법률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 및 필요사항을 반영했음

○ (○○○위원) 금융그룹의 감독대상을 6개로 선정한 배경은?

○ (금융위) 동 법률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앞으로 감독기법 및 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금융시장 상황, 피규제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

○ (○○○위원) 금융그룹의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권익이 신장되는 부분이 있는지?

○ (금융위) 현재는 개별회사별로 공시를 하고 있어 고객차원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향후 그룹차원에서 공시를 하면 금융그룹 차원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공시를 통해 고객의 정보 접근 및 합리적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고객 일반은 공시정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지만, 전문기자·학계 등에서 공시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사 등을 통해 전파할 것이라고 봄

○ (○○○위원) 대표회사와 소속회사간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차제에 이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 (금융위) 지난 2년간 모범 규준을 운영하면서 이같은 거버넌스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됨

○ (○○○위원) 행정처분의 면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책임 문제가 걸린 조항이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 (금융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으며,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수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거나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 (○○○위원) 금융그룹의 고객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금융위) 국무조정실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한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개선하겠음. 금융그룹의 고객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두는 것도 검토하겠음

(3) 위원회 논의

○ (○○○위원) 입법예고 기간중에 일부 이해관계자는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와 소속 회사간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오늘 참석한 이해관계자의 경우 타 법률과의 충돌가능성 등이 있어 이를 수용한다고 한 만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위원) 금융그룹을 감독하여야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시 일몰 설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법률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대표회사의 권한 부분은 해당 부처에 법률 시행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위원) '정당한 이유' 등의 면책사유를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해석할 경우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 또는 하위규정에서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할 필요

○ (○○○위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금융그룹의 고객'이라는 표현이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를 하위 규정에서 특정할 수 있도록 부대권고할 필요

□ 심의 결과 : 개선권고

○ 개선권고

- 의무 해태에 따른 행정처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등 면책사유를 법령에서 보다 명확히 할 것

○ 부대권고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범위에 포함된 '금융회사의 고객'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 이를 하위규정에서 범주화, 특정화할 것

○ 부대의견

- 복합금융그룹의 거버넌스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대표회사와 소속회사간의 권한과 책무는 금융위원회가 모범규정으로 시범운영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바람